# 선박안전법위반·배임수재

[부산지방법원 2020. 2. 18. 2019고합50]

# 【전문】

- 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6인
- 【검 사】이세종(기소, 공판), 변준석(공판)
- 【변 호 인】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3인

#### 【주문】

### ]

- 1. 피고인 1
- 가.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.
- 나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다.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원성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선박안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.
- 2. 피고인 2
- 가.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- 나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다. 피고인으로부터 1,000만 원을 추징한다.
- 3. 피고인 3
- 피고인은 무죄.
- 4. 피고인 4
- 피고인은 무죄.
- 5. 피고인 5
- 가.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.
- 나.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- 다.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박검사 거짓수검으로 인한 선박안전법위반의 점은 무죄.
- 6. 피고인 6
- 가.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.
- 나.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- 7. 피고인 7
- 피고인을 벌금 1,500만 원에 처한다.

#### [이유]

1

#### [이유]

1

## 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